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3032호
- 나.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안일자 : 2025년 8월 11일
- 라. 회부일자 : 2025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관광진흥법」 개정(2024.10.22.)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 여건 반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및 제8조)
- 나. 부칙에 시행일 및 적용례를 규정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 다. 관광특구 지정요건 중 관광시설 기준에 서울시 관광 여건을 반영하여 규정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2025. 6. 5. ~ 6. 25.) 결과: 의견없음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옥심)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 중, 시설 기준에 서울시의 특성과 관광여건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제안되었음.

나. 지역 여건을 반영한 관광특구 시설 기준 마련의 필요성

- 「관광진흥법」은 지난 2024년 10월 22일 개정을 통해, 각 지역의 특색 및 여건에 맞게 관광특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광

특구 시설요건을 각 시·도 또는 특별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바 있으므로 해당사항을 개정하려는 동 개정안은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 규정(안 제1조)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에 따라, 조례의 목적에 위임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 관련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관광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서울특별시</u> -----.

- 현행 조례는 자치사무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새롭게 위임된 사항을 포함하게 되었으므로, 법제처 입법례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하지만 동 개정안은 위임사항을 자치사무의 수식어구 관계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정확히 분리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향후에는 철저한 입법 검토를 통해 오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수정 의견 >

현행	개정안	수정 의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서울특별시</u> 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관광진흥법</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u>규정함으로써</u> <u>서울특별시</u> -----.	제1조(목적) ----- ----- ----- ----- <u>하며</u> ,----- -----.

(2) 관광특구 시설기준 신설(안 제3조 및 제17조)

- 동 개정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안 별표에 신설하여 규정하고자 함.

■ [별표]

서울특별시 관광특구 시설요건 세부기준(제8조 관련)

시설 구분	종류	구비기준
1. 공공편익 시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공영주차장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공중화장실 중 유료화장실은 별도로 표기할 것 다. 개방화장실은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만 포함
2. 관광안내 시설	관광안내소, 관광지 표지판	가. 각 시설이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나. 관광안내소 중 외국인통역 안내소는 별도로 표기할 것
3. 숙박시설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호스텔, 소형호텔, 의료관광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숙박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4. 휴양·오락 시설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수영장,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 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유원시설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5.接客시설	관광공연장, 관광유흥음식점, 관광극장유흥업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관광식당, 관광지원서비스시설, 국제회의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합하는 관광 편의시설로서 관광객이 이용하기에 충분할 것
6. 상가시설	기념품판매점, 백화점, 전통시장, 면세점, 대형마트 등 관광객이 이용하는 상가시설	하나 이상일 것

<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의 주요 관광특구 시설요건 비교 >

시설 구분	문화체육관광부(안)		서울시(안)	
	시설종류	구비기준	시설종류	구비기준
라. 휴양·오락시설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수영장,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유원시설 해수욕장 수렵장 동굴자원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온천장, 수영장, 산림휴양시설, 박물관, 미술관, 야영장, 관광유람선, 한옥체험시설, 종합유원시설 등록 및 신고체육시설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는 관광객이용시설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유원시설이 한 종류 이상일 것

- 동 별표의 서울시에서 지정하고자 하는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상위 법령 위임 이전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특구 시설요건과 비교하자면 휴양오락시설의 해수욕장, 수렵장, 동굴자원, 농어촌휴양시설, 활공장은 제외되었고,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은 포함되었음.

이는 서울시에 존재하지 않는 시설은 제외하고 관광산업 등록 기준상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하는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을 포함한 것으로서, 상위법령의 취지에 맞추어 서울시의 여건과 특색을 반영한 것으로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적절히 규정하였다고 보여짐.

- 다만, 상위법령의 개정(2024.10.22.)과 시행(2025.4.23.) 사이에 약 6개월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관광시설 요건 중 시설기준 자문회의’를 단 1회만 개최하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것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됨.

(3)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안 제8조를 제외한 제2조부터 제16조의3까지)

- 동 개정안은 제8조를 제외한 제2조부터 제16조의3까지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어긋난 부분을 광범위하게 수정하고 있음.

법제처가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반듯한 법령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및 <외래어 표기법> 등 어문 규정에 맞게 입안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동 개정안에는 자구 보완 사항이 다수 확인되는 바, 향후 조례안 입안 과정에서 본문의 관련 기준 준수 여부를 시 법무담당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정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문위원	임창균(2180-8113)	입법조사관	김예영(2180-8114)
------	----------------	-------	----------------